월/요/광/장

구길선

과연 무죄로 추정되는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업무를 정지하게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관해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다.

그 결정의 주요 논거는 해당 지방자치법 조항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 다시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피고인을 소송의 주체로 보지 아니하고 소송의 객체로 인정하였던 과거의 이른바 원님재판에서는 유죄의 증명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피고인을 처벌하였다. 이러한 소송절차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프랑스 혁명의 소산인 권리선언에서 '누구든지 유죄의 선고를 받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최초로 규정된 후 각국의 민주헌법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81년의 제5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무죄추정원칙을 입법화하였다.

형사피고인이 소송절차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한 것은 법원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제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국가의 형벌권은 국민의 신체,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실현과정에서의 오류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다.

무죄추정원칙은 재판단계에서의 유무죄의 판단기준이 될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등 강제처분에 대한 제한요소로 작용하며 미결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등 형사 절차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이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범죄의 혐의만을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유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사법권은 국가와 사인 간의 절차로서 국민의 재산, 신체,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다소라도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엄격한 제약을 받는 것이다.

물론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침묵으로 대응하여도 무방하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거부권도 이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법원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되고 법원도 예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고,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검찰, 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와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에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다. 피고인의 형사절차에 관한 서류는 공판 전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고, 공소장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 받으므로 수사 및 재판도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단 구속된 뒤라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불구속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구속적부심제도나 보석 제도 등은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죄추정원칙은 나아가 구속된 자라 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외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피고인에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것도 이러한 요청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사나 재판 현실에서 보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과연 무죄로 추정되는지 의심이 갈 때가 많이 있다. 오히려 유죄로 추정되지나 않는지 의심 가는 경우마저 있다. 맨 앞에서 본 지방자치법 조항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별 의심 없이 적용되어 온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함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아직도 舊態 벗지 못한 민주당 경선 논란

아직도 민주당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국민배심원제를 들고 나와 여론의 몰매를 맞은 민주당이 이번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 경선에선 결과가 뻔한 가산점제를 적용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여성이나 신인의 정치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후보자 경선 시 여성 15%, 만 45세 이하 청년의 경우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산점 문제에 대해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체 14명의 예비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인사가 여성으로서 가산점을 받은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과 박혜자 호남대교수, 만 44세인 송갑석 전 전남대 총학회장 등 3명뿐이다. 공천심사위원들이 예비후보의 당 기여도, 정체성, 당선 가능성 등 각 항목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점수를 낸 뒤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자체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질 않는가.

일각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가산점 적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는 것도 결과가 뻔히 예견되는 탓이다. 게다가 박 교수는 공천심사위 면접 전날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 당 기여도와 당선 가능성 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의원 역시 6·2 지방선거에서 탈락한 전력을 감안한다면 당선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균 의원이 가산점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앞서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민주당은 구태를 벗어야 한다.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민심 이반만 가져올 뿐이다. 지난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곤욕을 치렀던 민심의 변화를 유념하라는 얘기다.

한국 축구 역사 새로 쓴 태극 소녀들 장하다

한국 17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10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그것도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인 일본을 꺾고 세계정상의 고지를 밟아 기쁨을 배가했다. 1882년 축구가 한국 땅에 선보인 지 무려 128년 만에 날아든 낭보는 온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숙적 일본과의 결승전은 '사투'나 다름없었다. 전후반 90분과 연장전 30분을 다 치르고도 승부가 나지 않자 피를 말리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세계를 제패한 것이다. 태극 소녀들의 불굴의 투혼과 무서운 집중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여자축구의 현실을 보면 참담하다. 8월 말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여자축구 팀은 실업팀 7개를 비롯해 초등학교 18개 팀, 중학교 17개 팀 등 모두 65개 팀에 선수는 1450명에 불과하다. 등록 선수가 105만 명이 넘고 성인팀만 5000개가 넘는 독일 등 외국의 현실과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더욱이 여자축구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팀이 올해 4개나 사라졌다고 한다.

태극 소녀들이 이룬 위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척박한 토양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세계 여자축구의 변방으로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클럽축구 시스템의 정착 등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유망주들과 지도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도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뛴 선수들과 감독 등 지도자,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던 가족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법조칼럼

김신원

교통사고 발생 신중한 대처의 중요성

변호사로서 개업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오후, 고향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친구는 개업을 축하한다면서, '비접촉성 뺑소니'를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사연인즉, 직장 후배가 차를 운전하면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했는데, 2차선의 후행 운전자인 임산부가 '당신 때문에 급정거를 해서 놀랬다'면서 갖은 욕을 하고, 후배 차량의 앞을 두어 차례 막는 등 화풀이성 운전을 한 다음 갔다는 것이다.

후배는 '참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하여 출두했더니, 임산부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경찰이 조사를 불리하게 해서,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필자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운전 스타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보곤 한다. 위 친구 후배의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운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뒷차량 운전자는 난폭운전으로 생각했나 보다.

그러나 뺑소니로 신고한 것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일이라는 것이 꼬이면 그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며, 유죄 판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했다.

이전에 필자가 변론한 사건도 '비접촉성 교통사고'였던 것 같다.

피고인은 대학생이었는데,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을 하는 중에, 사거리에서 좌측도로에서 내려오는 자전거와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였는데, 자전거에 탔던 한 학생이 다치게 되었다.

피고인이 배달에 신경이 쓰여, 현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터라, 피해 학생의 부모가 뺑소니로 신고했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했다.

필자는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 장소를 그린 약도, 사고 현장을 4면에서 찍은 사진 등을 새로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관련 판례에 따르면 당해 사고 현장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폭이 넓은 방향의 도로에서 진행해왔고, 통행의 우선순위가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자전거 핸들에 양팔을 걸치고 탑승한 점,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접촉사고가 없었던 점, 당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위험한 자전거 탑승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이를 피고인의 행위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변소했다.

다행히,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서 필자 나름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보람이 있었다.

친구 후배의 경우에도, 자신의 끼어들기에 과실이 없으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뒷차량 운전자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든지, 뺑소니의 상해로는 볼 수 없다는 논지로 무죄 변론을 예상해 본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이나 친구 후배 사건의 경우, 차를 운전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사건인 것 같다. 교통사고 관련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억울하게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불이익까지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 사례들이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고

심명섭

가을 독서 습관 겨울로 이어진다

이제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철로 접어들었다. 이른바 등화가친의 계절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을이 되면 책에 대한 갖가지 행사가 열린다.

특히나 올해는 정부, 자치단체, 각종 도서관에서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만날수록 특별한 당신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각종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 행사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 책 읽는 재미와 기쁨을 만끽하고 독서 생활화를 위해 한 달 동안 내내 펼쳐진다.

책을 읽어라. 왜 안 읽느냐 하는 얘기는 지난 수 십 년간 물릴 만큼 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부끄러울 만큼 독서량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만큼 글을 숭상하고 인문적 교양을 중히 여기는 국민도 없다.

우리 선조는 가난한 건 부끄럽지 않아도 책이 없는 건 부끄럽게 여길 만큼 책을 가까이 한 역사적으로 드문 문화민족이다. 오늘날 정부가 주도해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책과 사람이 밀착해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무더위와 태풍이 할퀴고 지나간 쓰라린 자국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지만, 가을은 우리를 살찌우는 계절로 만들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할 것이다. 더구나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 다음에 오는 더할 수 없이 쾌적한 기온과 청명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와 사색에서 진리탐구를 위한 독서야말로 우리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크고도 귀중한 특전이며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을 읽고서도 무슨 의미인지 해독하지 못한다면 이는 뜬 구름을 붙잡아 보려는 것 같이 의미 없는 일 일 것이다.

따라서 책을 읽어가며 그 내용을 파악하려면 효과적인 독서법에 의한 독해력 배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훈련은 학창생활의 교육과정에서 습득해야할 문제이지만 우리의 교육과정이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어서 독서교육이 등한시되어왔다.

이러한 부분의 해결 일환으로 올해 발표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들여다보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력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항목이 추가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독서 항목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 독서 항목이 추가된 것은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학생의 모든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항목이 추가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평생 자신의 독서 이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대입에도 그리고 취업 부분까지도 연결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을철에 익힌 독서의 습관은 겨울로 이어진다. 겨울은 기나긴 밤이 있어 가을에 익힌 독서와 사색은 겨울에 제철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장차 거두어들일 결실을 위하여 이 가을은 우리 모두가 안중근 선생의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을 되새기면서 뜻있는 독서의 계절로 승화시키자.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과장·행정학 박사〉

우후죽순 난립하는 쌀 브랜드 정비해야

추석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쌀을 사러 마트에 갔었다. 무수히 많은 브랜드 쌀 중 무엇을 사야할지를 고민하는 데 20분이 걸렸다. 쌀을 사러온 소비자들은 대부분 카트를 밀며 여러 가지 쌀을 비교하지만 쇼핑의 즐거움보다 수없이 많은 쌀 브랜드에 혼란스러움이 더해진다.

브랜드는 중요하다. 그러나 브랜드와 이름의 개념은 다르다. 현재 유통업체에 진열된 수많은 쌀은 브랜드로 볼 수 없다. 단지 쌀에 이름을 만들고 디자인 작업을 거친 상품일 뿐이다. 소비자가 그 상품의 이름을 기억할 때 비로소 브랜드의 가치로 통하는 것 아닐까?

이제는 우리 쌀의 브랜드를 웬만큼 정비하고 더 이상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걸 막았으면 한다. 현재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의 걱정이 큰 걸로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쌀의 브랜드 난립을 막고 제대로 된 쌀 위주로 생성을 하되, 그 외에는 다른 작물로 대체해 쌀의 브랜드 증가와 생산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윤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無等鼓

흔적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으뜸은 등산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지원센터가 지난 2008년 실시한 '등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 사람은 1560만명, 두 달에 한 번 이상은 1886만명에 달했다. 18~69세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력서 취미란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등산'이다.

이처럼 등산인구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접근성 때문일 것이다. 국토의 70%가 산지여서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언제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심지어 평야지대에서도 산을 볼 수 없는 곳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산줄기가 완만하고 부드러워 사람들을 위압하거나 주눅 들게 하지 않고, 그 품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고이 껴안는다. 주5일제 시행과 생활수준 향상도 산행인구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주말이면 능선, 계곡 할 것 없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귤과 사과 껍질 비롯해 막걸리병, 방치된 배설물 등이 곳곳에 널려 있다. 바위나 나무에 낙서를 하거나 소속 산악회와 길을 알리기 위해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리본, 무분별하게 쌓아 올린 돌탑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등산객이 남긴 '흔적'들이다.

산행문화와 관련해 최근 주목받는 것이 '산에 인간의 흔적을 남기지 말자'는 LNT(Leave No Trace)운동이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등산로 이외 샛길로 가지 않기, 지정된 곳에서만 야영하기,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기 등이 그것이다.

푸른 하늘, 청명한 대기,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단풍나무 숲. 바야흐로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잠시 정상에 올랐다하여 우리가 산의 주인은 아니다. 다만 손님일 뿐이니 부디 '아니간 듯' 다녀올 일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